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특성 및 유효세율 변화

전 주 성*

요 약 문

이 연구에서는 1996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걸친 기업특성과 실효세율의 변화를 주요 기업군별로 검토하였다. 부채비율,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 현금보유 비율 등 유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변수의 경우 같은 대기업이라도 재벌과 일반 대기업간,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저법인세율 대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차별이 두드러졌다. 이는 기업정책에 있어 단순 규모 이외의 기업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경제적 이익 개념을 사용한 영업이익 기준 유효세율은 부채비율 등 기업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컸다. 특히 부채비율의 감소폭이 컸던 재벌기업의 경우 이 유효세율 측정치의 변동 또한 컸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감소 효과와 외환위기 이후 세제지원이 늘어난 측면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나타났다. 제도적 조세지원 효과를 반영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세율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측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평균유효세율, 기업특성, 부채비율, 외환위기
JEL 번호: H2, M2

I. 서론

우리나라 기업정책은 외형 규모 중심으로 수립되어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되고 정책 수단도 대기업 정책은 부채비율 상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제한, 출자총액 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 중심이며, 중소기업은 재원조달, 투자, 기술혁신, 공장입지 등과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이 주 내용을 이룬다. 다른 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jjun@ewha.ac.kr
논문투고일: 2007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07년 8월 23일

않은 이러한 규모 중심의 기업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 나아가 정부정책의 경계선상에 서있는 한계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준을 졸업하면 정부지원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 증가에 주저하기 쉽고, 대기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 등 규모에 따른 규제를 의식해 편법을 이용한 규모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형 규모 이외의 다양한 기업특성을 고려해 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주요 특성이 규모별로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정부 정책이 기업규모별로 어떤 차별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업의 주요 특성을 주요 기업군별로 살펴보고, 둘째,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수단인 세제유인이 기업규모나 특성에 따라 어떤 차별적 효과를 낳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차원의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일차적으로 미시 기업 자료에 의존해야한다. 특히 기업 규모 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관련 미시 연구들은 대체로 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정한 탓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일부 연구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표본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까지 포함한 표본을 구성하여 각 기업군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도록 했다.

기업특성과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 및 환경 변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비율, 내부거래, 투자총량 등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 스스로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에 집중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기업군별로 차별화 현상이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기간을 1996-2005년으로 잡아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 특성 변화를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검토하고자 했다.

본문의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로는 같은 대기업이라도 재벌기업과 일반 대기업 간,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법인취제세율 해당기업과 여타 중소기업 간에 기업특성 및 유효세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 또한 유효세율의 결정 요인으로서 명목적 조세지원 외에 부채비율이나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중과 같은 기업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수준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기업군별 실효세율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성숙으로 모든 기업군에서 현금거래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는 조세정보의 확대로 이어져 세수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자료와 유효세율 측정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Ⅲ절에서는 기업특성과 유효세율의 표본기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한다. 제Ⅳ절에서는 간단한 요약과 정책시사점을 담는다.

Ⅱ. 자료 및 방법론

1. 자 료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수를 조사하면 총 3,647개 기업이 존재한다. 그 중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적으로 기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340개¹⁾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경우와 금융업에 속한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등 분모가 음(-)이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²⁾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세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체자료에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0인 경우와, 평균유효세율, 부채비율, 특별이익³⁾의 이상치들⁴⁾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
- 1)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존재한 2340개 기업의 자료를 2005년까지 연장하였다.
 - 2) 이월결손금은 세무상의 수치를 의미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재무제표상의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인 기업을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으로 보았다.
 - 3) 재해나 자산매도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과는 관계없이 기업수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 4) 평균에서 표준편차 삼배수 밖의 범위에 있는 추정치들.

하여 부여된 코드에 따랐다.⁵⁾

1998년에 이연법인세회계⁶⁾가 도입되면서 법인납부액의 표시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⁷⁾ 1999년도 이전에는 손익계산서에 제시된 법인세부담액을 사용하였지만 1999년 이후의 법인세부담액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 상의 법인세등명세서에서 산출하였다.

1) 기업의 분류

2,340개의 표본기업들을 기업규모, 지배구조, 적용세율에 따라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본 표본에는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에 금감위등록 기업 자료를 추가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늘어났다.

기업 규모: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여, 대기업과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자본금 80억 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보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지배구조: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기업은 일반 대기업과는 다른 규제를 받으며, 재무구조나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타 기업군과 차별이 크므로 따

-
-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기업의 자본금/매출액/종업원수를 그 기업이 속한 업종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중소기업/대기업 여부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6) 회계이익과 과세표준상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연법인세차(자산:미래 납부 법인세감소-미래과세소득감소효과)라 하며, 반대인 경우를 이연법인세대(부채:미래 납부 법인세증가-미래과세소득 증가효과)라 한다.
- 7) 1999년도 이후의 손익계산서에는 실제 법인세부담액이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을 기록한다.
- 8) 이 기준은 최근 2005년 개정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기간이 1996~2005년 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벌기업 대 비재벌기업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집단에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2001년까지는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을 가리켰다.⁹⁾

법인최고세율 대 최저세율: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 상에서 법인세율을 공시할 경우 그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 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과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분석 기간 중 1996년-2001년의 최고최저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28%, 1억원 미만인 기업은 16%이고, 2002년도 이후에는 각각 27%, 15%의 법인세율로 바뀌었다.¹⁰⁾ 2,340개의 표본기업 중에서 1996년에는 1,733개였던 최고세율기업이 2003년에는 2,004개로 증가한다. 이는 과세 기준점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개별기업들의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최저법인세율 적용 기업의 표본수가 줄어들고, 또 영업이익이 음인 경우가 많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많다. 따라서 2003년 이후의 최저법인세율 기업의 측정치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기업특성 변수

기업규모: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를 이용하여 기업집단간의 규모차이를 볼 수 있다.

부채비율: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¹¹⁾/자기자본’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가감한 항목으로서 이자수익과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두 수익변수의 관계는 부채비율과 관련이 있다.

수출비율: 수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1999년 이전의 조세감면 규제법에는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9) 상장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재벌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재벌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이거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171개의 재벌기업 표본 중 7% 정도 존재한다.

10) 각 세율은 주민세를 가산하지 않은 명목세율이다.

11) 이차지불부채.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수출과 관련된 조세 지원이 많았다. 그러나 1998년 4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1999년부터는 이 보조금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 '(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중인 자산-토지)¹²⁾/총자산'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같은 규모 자산이더라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조세지원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변수를 감소시켜 유효세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현금보유비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표1>은 표본기업 특성의 평균치를 분석대상이 된 기업군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전체 표본기업 2,340개 중에서 대기업이 653개, 대기업 중 다시 재별로 분류되는 기업은 182개이다. 중소기업 표본 수가 1,687개인데 비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421개이다. 즉,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그 규모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매출, 종업원 수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당연하겠지만, 재별과 비재별의 차이도 매우 크다. 재별기업의 경우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평균에 비해 자산과 매출이 두 배 이상 크며 종업원 수 역시 두 배에 근접한다.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소기업의 자산과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재별이 비재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최저세율 적용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더 높았다. 수출비율의 경우 대기업이나 재별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비재별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가 중소기업 보다 재별기업이 비재별기업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 특히 재별기업군에 제조업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중에 정보통신사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이하 감가상각대상자산

<표 1> 표본기업의 특성, 1996-2005 평균값

	표본수	자산 (억원)	매출 (억원)	종업원수 (명)	부채 비율	수출 비율	감가상각대상 자산비율
전체기업	2,340	4,220	3,890	703	0.90	0.18	0.22
대기업	653	12,000	10,900	1,838	0.92	0.24	0.25
중소기업	1,687	442	441	149	0.90	0.16	0.21
재벌	182	25,000	25,200	3,145	1.03	0.25	0.28
비재벌	2,158	1,940	1,540	436	0.89	0.18	0.21
최고세율	1,919	4,380	4,030	728	0.88	0.19	0.22
최저세율	421	125	130	57	1.55	0.04	0.24

주: 부채비율=(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자기자본
 수출비율=수출액/매출액
 감가상각대상자산비율=(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중인자산-토지)/총자산

2. 유효세율의 측정

정부의 조세지원이 기업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인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계유효세율의 측정이 필요하다. 한계유효세율은 통상 신규 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 규정을 요약한 파라미터를 사용해 추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확히 포착하기 힘들고, 나아가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이용되는 정도를 알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회피가 만연해 있고 법인세 운용이 복잡한 경우, 명목상의 법제도가 시사하는 투자유인과 실제 조세효과 간에는 괴리가 클 수 있다.

이러한 한계유효세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한 조세의 크기를 경제적 이익으로 나눈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실제의 납세액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세제도나 다양한 조세유인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자본스톡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계투자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어떤 종류의 유효세율을 사용할 지는 연구의 목적이나 자료의 가

용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사용하는 측정치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계장비와 구조물, 토지 등 자산의 성격에 따른 투자지원의 실효성을 보는 목적으로는 한계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른 세부담의 격차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원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업자료를 사용한 평균유효세율 분석이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한 기존 문헌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세부담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측정치를 구해 다양한 유효세율을 계산했고, 표본의 특성에 따른 측정치의 안정성이나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측정된 유효세율과 그 결정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이 부담한 세금을 법인의 세전소득 측정치로 나눈 값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개념이다. 경제적 이익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정책이나 기업특성의 변화로 세부담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효세율도 달라질 것이다. 분자인 법인세는 대부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실제 납세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모인 세전소득을 대변하는 변수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의한 유효세율 측정 연구는 권순철·권순창(1993), 고종권(1997), 이창우·전규안(1997), 박한순(2000), 노현섭·정은주(2001) 등에 상세히 요약되어 있다. 또한 유효세율 측정치와 기업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안숙찬(1996), 전규안(1997), 노현섭(2001) 등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측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유효세율 자체나 이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효세율의 값이 변하고, 또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세율의 계산 자체 보다는 이것의 경제적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성(2004)은 경제적 이익의 정의, 조세절감요인 간의 구분, 나아가 유효세율 변동에서 세부담과 경제적 이익 변화가 공헌하는 정도 등을 사전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유효세율의 측정치를 해석하거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래에서는 특정 유효세율 측정치의 경제적 해석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요약한다.¹³⁾

첫째, 유효세율의 분모로 들어가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 이론적 타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Haig-Simons 소득 개념의 경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항목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자비용 등의 손금조정이나 조세법상의 소득공제가 행해지기 이전의 이익 측정치인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들 중 어느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택하느냐는 양자의 차이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상적인 영업 관련 비용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을 경제적 이익의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둘째, 기업의 세부담은 조세제도뿐 아니라 재무구조와 같은 기업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런 기업특성의 변화를 제외한 조세보조금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 경우 분모가 더 이상 경제적 이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에 의한 것이든 조세보조금의 영향이든 유효세율이 명목세율 보다 낮아지는 원인과 정도를 규명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한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분모가 다른 평균유효세율을 단순 비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분모로 사용하지 않은 유효세율을 명목세율과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초래하기 쉽다.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 수준이 다른 이익 측정치를 분모로 사용한 유효세율들의 경우 의미 있는 비교가 쉽지 않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역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¹⁶⁾

13)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전주성(2004) 참조.

14) 물론 이 변수 자체가 완벽한 이론적 정의는 아니므로 매출총이익을 분모로 사용한 유효세율을 보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법인세차감전순이익기준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는 조세보조금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 된다.

16) 이들 유효세율의 개별적 변동성은 의미 있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예컨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유효세율의 경우 기업특성과 조세보조금 요인을 포괄한 조세절감 효과의 시계열적 또는 횡단면적 변동을 추정하기에 유용하다. 반면 법인세차

셋째, 유효세율의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떤 변인에 의해 분자인 세부담과 분모인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이다. Wilkie(1992), Scholes and Wolfson(1992) 등에 의해 강조된 암묵적 조세(implicit taxes)는 조세의 부담을 명목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대가격의 변화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세지원의 영향으로 특정 부문에 자본이 진입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세전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부담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암묵적 조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유효세율의 변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 조세의 변화에 따른 세전이익의 변동에 기인한 부분, 그리고 조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세전이익만으로 유효세율이 변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유효세율 정의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ETR1과 ETR2는 경제적 이익 개념을 분모로 사용한 유효세율이다.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둔 유효세율은 명목법인세율과의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나아가,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이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 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기업특성이 경제적 이익에도 영향을 주어 암묵적인 조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 효과와 암묵적 효과를 종합한 실질적인 조세부담 효과라고 해석해야 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사용한 ETR3는 조세지원 효과를 분리해 보기에 적합한 측정치이다. 그러나 이 측정치를 다른 유효세율이나 명목세율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다. ETR4는 관행적인 이익 변수 대신 총자산을 분모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명시적 효과를 경제적 이익의 변동에 따른 암묵적 효과와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경제적 이익과 상관관계는 높으면서 세부담 결정요인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를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 것이다.¹⁷⁾

마지막으로 QTAX는 다양한 준조세의 측정치를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비율

감전순이익을 분모로 사용한 유효세율의 경우 순수한 조세보조금의 변동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

17)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총자산규모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다. 준조세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공과금이나 부과금,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시뇨리지(Seigniorage)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특별히 정해진 범주가 없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변수를 조합해 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법정 세금 부담과의 비교가 주목적이므로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그리고 ‘기부금’ 항목을 합산해 준조세 부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¹⁸⁾ 준조세부담률의 분모를 매출총이익으로 한 이유는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항목이며,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는 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되므로 영업이익을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 분모와 분자에 모두 영향을 주어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 2> 조세부담의 측정치

ETR1	법인세/매출총이익
ETR2	법인세/영업이익
ETR3	법인세/법인세차감전순이익
ETR4	법인세/총자산
QTAX	(세금과 공과+지급수수료+기부금)/매출총이익

<표 3>은 유효세율 측정치의 표본기간 평균값을 기업군별로 보여 준다. 각 유효세율 측정치에 있어 기업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간단한 검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평균값과 함께 보여 준다. 각 기업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t-검증 결과 모든 평균유효세율 변수에서 기업규모별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¹⁹⁾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기초 유효세율인 ETR2의 경우, 전체기업 평

18) 세금과 공과는 영업에 관련되는 조세 즉 영업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각종 단체부과금, 각출금, 회비 등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는 아니더라도 영업활동과 관련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조세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 수수료는 세무조정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각종 신고대리, 청구대리 수수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법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user fees)로서 일종의 조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기부금은 각종 성금, 위문금, 학술단체기부금, 기금조성금 부담액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들 중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항목이며,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과 제조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19) 검증의 p-값은 대부분 영에 가까웠는데 ETR2의 경우 재별과 비재별 간 비교의 유의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균이 20.5%(ETR3는 23.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본기간 동안의 법정 최고법인세율이 28%에서 25% 사이였고 주민세 등의 부가세까지 존재함을 고려하면 상당한 조세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평균유효세율측정치에서 대기업과 최고세율기업이 중소기업과 최저세율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은 편인데 본 논문의 표본에 포함된 벤처기업에 대한 추가적 조세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낮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²⁰⁾ 외환위기 이후 기업 간 부채비율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대기업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절세효과가 조세지원효과에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을 비교하면 비재벌기업의 ETR2가 다소 크게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면 ETR2의 경우보다 ETR3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다.

ETR4는 자산 대비 세부담 비율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한 ETR2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자산을 경제적 이익의 도구변수로 본다면 유효세율 분모인 경제적 이익의 변동에 따른 유효세율 변화가 분석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준조세 변수인 QTAX를 보면 대기업의 값이 현저하게 크고 그 중에서도 재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유효세율의 비교(1996-2005, 평균값)

	ETR1		ETR2		ETR3		ETR4		QTAX	
	세율	t값 ²⁾	세율	t값	세율	t값	세율	t값	세율	t값
대기업	0.085	14.98	0.236	6.41	0.281	14.62	0.019	3.84	0.115	14.93
중소기업	0.061	(0.000)	0.191	(0.000)	0.209	(0.000)	0.017	(0.000)	0.060	(0.000)
재벌	0.077	3.57	0.191	1.695	0.264	4.44	0.016	3.08	0.139	11.24
비재벌	0.068	(0.000)	0.207	(0.090)	0.229	(0.000)	0.022	(0.002)	0.071	(0.000)
최고세율	0.071	15.34	0.208	6.36	0.248	5.13	0.018	13.02	0.081	4.08
최저세율	0.014	(0.000)	0.105	(0.000)	0.186	(0.000)	0.004	(0.000)	0.039	(0.000)

주: 1) ETR1=법인세/매출총이익, ETR2=법인세/영업이익, ETR3=법인세/법인세차감전순이익

ETR4=법인세/총자산, QTAX=준조세/매출총이익

2) 두 집단 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t검증결과, ()은 p 값임.

2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2006) 참조.

Ⅲ. 기업특성과 유효세율의 추이

이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주요 기업특성과 유효세율의 변화를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세율기업으로 나눠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산업별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 지도 검토한다.

1. 기업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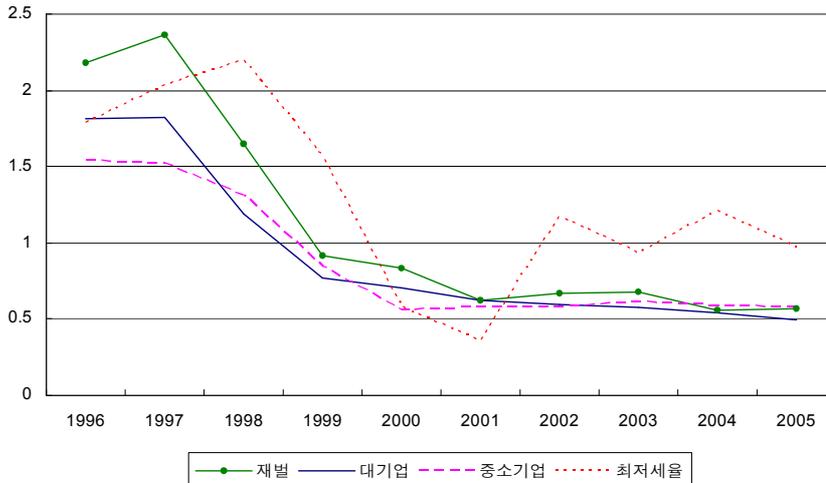
<그림 1>은 부채비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모든 기업군에 있어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감소폭이 가장 큰 이유는 부채비율 200% 상한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차입경영이 힘든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²¹⁾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저세율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군과 기타 기업 간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최저세율기업의 경우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았는데 그 격차가 좁혀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세율 적용기업의 경우 명목적인 조세지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부채비율까지 높다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기존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특성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림 2>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나타낸다. 외환위기의 발발과 함께 환율이 상승하면서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수출비율이 증가했다. 이후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출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부침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상당부분 조세지원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9년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수출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많았으나 1998년 4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1999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21)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은 향상됐지만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가 어려워 사내유보 자금이 늘었다. 회사 내부자금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림 1> 부채 비율



주: 1) 부채비율=이자지불부채/자본총계
 2) 재벌: 공정위 지정 30대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최저세율: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표 4>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설비투자비율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대기업 ¹⁾	7.3	9.7	6.5	7.4	8.2	6.0	7.5	8.2	9.4	7.2
	중소기업 ²⁾	5.5	5.6	6.0	5.7	5.5	4.9	5.0	4.6	4.5	n.a
출하액대비 설비투자 비율	대기업	17.8	13.4	6.9	6.6	7.9	6.8	6.3	7.5	n.a	n.a
	중소기업	3.4	2.3	0.9	1.4	1.6	1.5	1.5	1.4	n.a	n.a

주: 1) 대기업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대기업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상의 중소기업으로 300인 미만인 회사들을 포함함.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총량자료인 <표 4>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1996년에는 1.8%의 차이를 보였는데 2004년에는 4.9%의 격차가 발생했다.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성공해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수익성도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중국의 부상 등 불리한 국제환경의 전개와 구조조정의 미비로 수익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중소기업의 수익성 저하는 설비투자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도 설비투자 부진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율은 대기업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다.²²⁾ 이러한 장기적인 영업이익률 및 설비투자 하락추세는 경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 판단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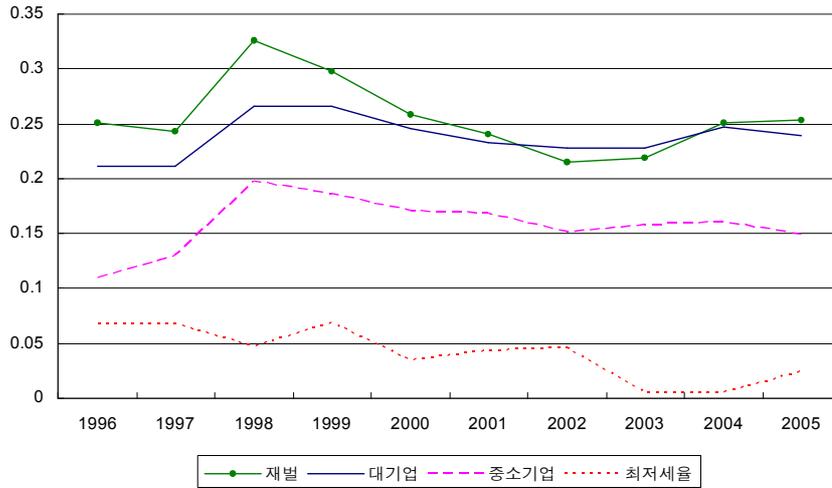
<그림 3>은 수익성 지표인 기업군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벌의 수익성이 일반 대기업을 앞지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벤처기업 열풍²⁴⁾에 힘입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확연한 성과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집합이라 볼 수 있는 최저세율 기업군의 성과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거시자료 등에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추세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2) <표 4>에 의하면 대기업은 출하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에서 1998년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1% 대에 머물러 있다.

23) 최근 들어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입지가 크게 약화 되고, 특히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전통적 유대관계도 취약해졌다. 국내적으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구조조정의 미비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자원조달과 위험관리 측면을 도와줄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점이다.

24) 2,340개의 표본기업중 834개의 벤처기업(중소기업 진흥청 지정)이 있는데 그중 799(96%)가 중소기업이다.

<그림 2> 수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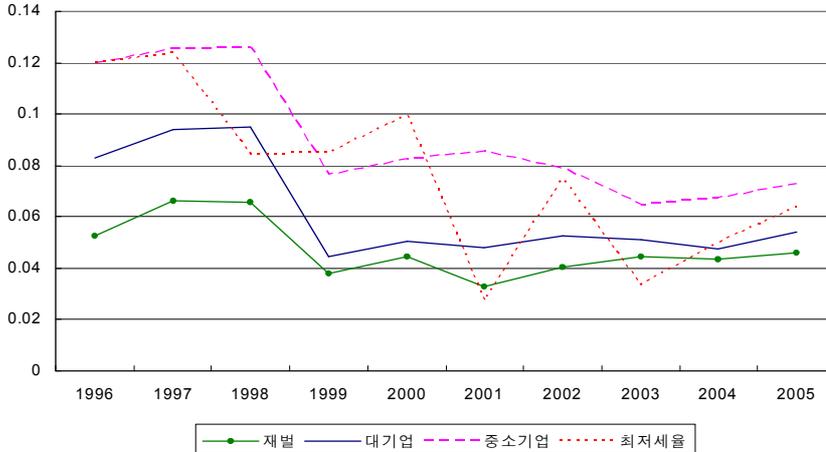
주: 수출비율=수출액/매출액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3>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주: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4> 현금보유비율



주: 현금보유비율=현금및현금등가물/총자산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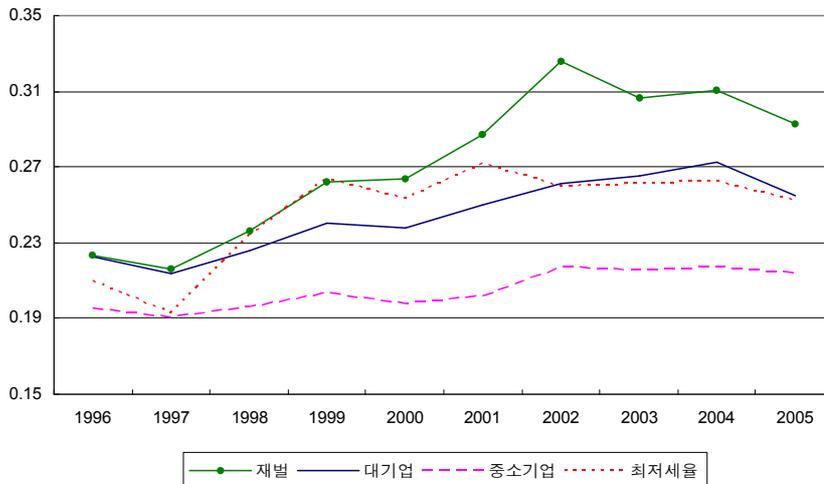
<그림 4>는 자산대비 현금보유비율을 보여준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중소기업군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비해 현금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기업군에서 현금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Jun(2006)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제도의 성숙이 많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과세기반(특히, 부가가치세, 법인세)이 넓어진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경제의 비중이 높고 장부 문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세수기반 자체가 지하경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법규정의 정비만으로 세수기반이 넓어지기 어렵다.²⁵⁾ 오히려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일 수 있다. 외환위기 과정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서비스의 편익을 높여(즉, 현금거래의 상대적 비용을 높여) 조세정보를 확대시킨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총자산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가속상각에 따르는 공제혜택이 커질 것이다. 지난

25) 서구식 세제개편 방안인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는 현금경제의 비중이 늘어 세수기반이 침식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10년 동안 이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기업의 비율이 여타 대기업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중이 높다. 반면 중소기업 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²⁶⁾

<그림 5> 기업군별 감가상각대상 자산비율



주: 감가상각대상 자산비율=(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중인자산-토지)/총자산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이상 기업특성의 추이를 보았고 아래에서는 다양한 정의의 유효세율 측정치들을 살펴본다. <그림 6>은 가장 기본적인 유효세율인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의 추이를 보여준다.²⁷⁾ 우선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4개 기업군 중 대기업의 유효세율이 제일 높고, 소기업의 유효세율이 제일 낮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중간에 해당한다. 재벌의 실효세율이 일반 대기업에

26) 표본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에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대기업 5% 비해 높다. 반면 절반이상의 최저세율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해있다. 이는 대기업의 61%와 비견된다.
 27) ETR1 즉, 매출총이익 기준 유효세율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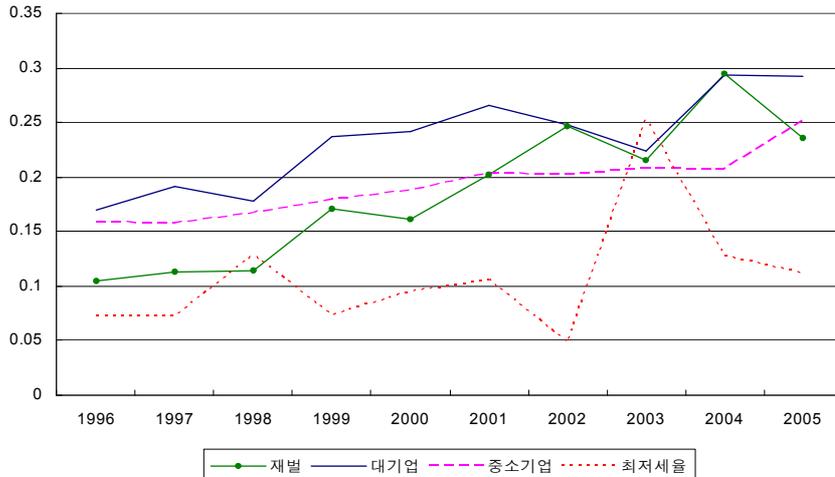
비해 낮은 것은 부채비율이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제 혜택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적 조세지원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이전에는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축소와 함께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아지면서 2002년에는 대기업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명목세율을 포함한 제도적 조세지원의 효과가 워낙 타 기업군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기업군의 유효세율은 최근 들어 불규칙적인 변동을 보이는데 이는 <그림 4>에 나타난 부채비율 변동과 맥을 같이한다.²⁸⁾ 즉, 부채비율이 이 증가하면서 유효세율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해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측면과 외환위기 직후 세제지원이 늘어난 측면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재벌기업에 비해 유효세율 상승이 덜 가파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재벌이 아닌 일반 대기업군의 경우 유효세율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일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만큼 명목상의 조세지원도 없으면서 동시에 재벌만큼 부채비율 등 조세절감으로 이어지는 비조세요인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감소로 최근에는 재벌대비 세부담 불이익은 다소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지원이 늘어나면서 이들 대비 세부담 불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게 된 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은 없어지는 반면 재벌 등 아주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와 같이 재무구조 등에 따른 암묵적 조세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는 기업의 외형적 규모 결정에 왜곡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

28) 예컨대 부채비율이 증가한 2001-02년도 기간에는 유효세율이 감소했고, 부채비율이 감소한 2002-03년도 기간에는 유효세율이 증가했다. 이 기업군의 경우 앞서 자료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2003년도 이후 표본에서 탈락한 기업이 많아 다소 불안정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림 6> 영업이익 기준 세부담



주: 영업이익 기준 세부담=법인세납부액/영업이익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7>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유효세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측정치의 경우 조세지원의 실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 표본기간에 걸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측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보조금과 같은 조세지원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후하게 제공됨을 반영한다. 영업이익 기준 실효세율과는 달리 재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세부담의 차원에서 차별하는 가장 큰 변수가 부채비율과 감가상각자산 비율임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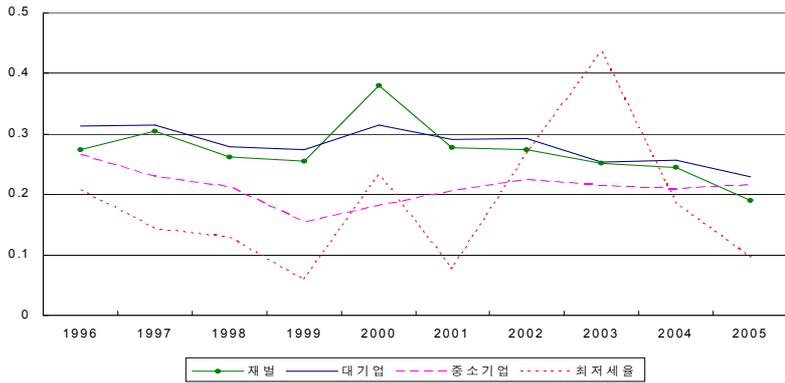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외환위기 직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집중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유효세율이 대기업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이 분모인 순이익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이용 정도가 낮아진 것인지 등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없이는 추론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상의 조세지원 제공이 실질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²⁹⁾

29) 2000년도는 법인세수가 급증한 다소 특이한 연도이다. 최저세율 적용 기업군의 유효세율 변화가 2003년도 이후 불안정한 것은 자료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앞의 각주 참조).

<그림 8>은 관행적인 소득 변수 대신 총자산을 분모로 사용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총자산규모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명시적 효과를 경제적 이익의 변동에 따른 암묵적 효과와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경제적 이익과 상관관계는 높으면서 세부담 결정요인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을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도구 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 이 측정치의 경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유효세율(<그림 6>)과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³⁰⁾

<그림 9>는 광의의 준조세를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준조세 부담의 규모가 큰 것은 부분적으로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이 심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산업에서 독과점 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찬조금 및 부담금의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자발적 기부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준조세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좀더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³¹⁾

<그림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세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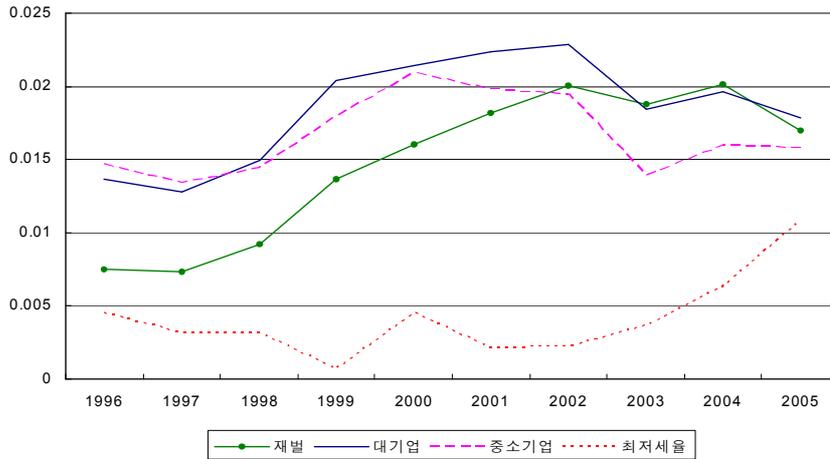


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세부담=법인세납부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30) 중소기업의 경우 양 유효세율 간의 차이가 좀더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은 자본규모가 작으므로 자본스톡의 변화에 따른 한계생산성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즉, 조세변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좀 더 예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조세 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매우 정직한 계량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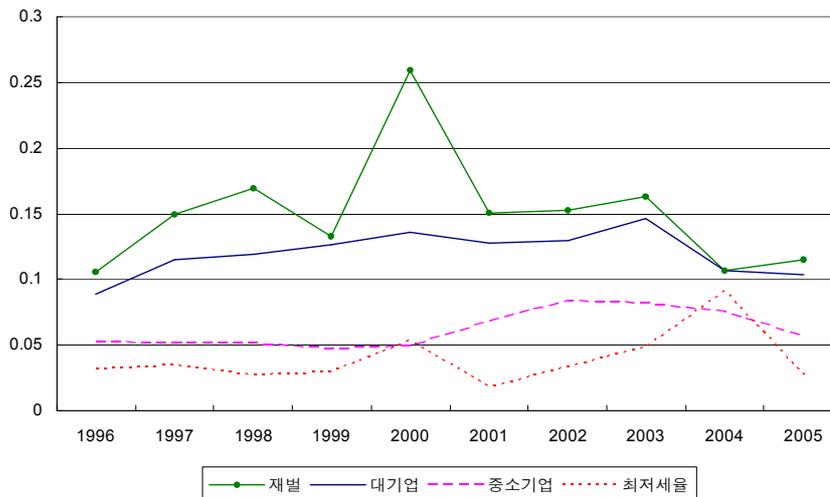
31) 손원익 외(2004)에 따르면, GDP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3년에 3.2% 수준에 달한다.

<그림 8> 자산대비 세부담



주: 자산대비 세부담=법인세납부액/총자산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9> 준조세부담률



주: 준조세부담률=(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기부금)/매출총이익
 자료: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특성과 유효세율의 차이가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기업특성에 따라 산업별 격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환위기를 전후해 이러한 산업별 격차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의 산업간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자산대비 고정자산 비중이나 수익성의 산업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이는 차입재원이 더 이 이상 기업의 주요한 결정변수가 아니고, 수익성의 불확실성은 더 늘어났음을 암시한다.³²⁾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직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의 기업특성과 실효세율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수익성, 재무구조, 생산 및 판매구조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긴 시간의 경과를 표본에 포함한 본 연구에 의하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업특성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같은 대기업이라도 재벌과 일반 대기업간,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저법인세율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별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업정책에 있어 단순 규모 이외의 기업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유효세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부채비율과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을 들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며 모든 기업군에 있어 크게 하향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감소폭이 큰 데 이것은 부채비율 200% 상한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차입경쟁이 힘든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재벌기업의 비율은 여타 대기업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표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은 반면, 높은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과

32) 산업간 부채비율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실제 유효세율의 산업간 차이 축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유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특성 변수의 변화가 산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이 꾸준히 향상된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집합이라 볼 수 있는 최저세율 기업군의 성과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거시자료 등에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 추세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산대비 현금보유비율의 경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중소기업군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비해 현금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기업군에서 현금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세정보가 증가해 과세기반이 넓어진 측면이 있다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지원의 대표적인 형태인 조세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조세지원의 방식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의 개념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법정세율이나 비과세 감면 등 조세제도적 측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불리하지만, 대기업(특히, 재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규정과 지원제도(이자공제, 감가상각, 수출지원 등)의 이용을 통해 실효세율을 낮출 여력이 높다. 나아가 실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 이용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버거워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순히 제도적 특성만으로 유효세율을 계산하면 조세지원 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이익 개념을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유효세율이라 볼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 유효세율은 조세지원 효과 외에도 부채비율이나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중과 같은 기업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군별로 부채비율의 차이가 크고, 나아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채비율의 변화가 컸기 때문에 이 유효세율 측정치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이 된 기업군 중 대기업의 유효세율이 제일 높고, 소기업의 유효

효세율이 제일 낮았으며 재벌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중간에 위치했다. 재벌의 실효세율이 일반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부채비율이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제 혜택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적 조세지원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이전에는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축소와 함께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아지면서 2002년에 이르면 대기업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명목세율을 포함한 제도적 조세지원의 효과가 워낙 타 기업군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해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측면과 외환위기 직후 세제지원이 늘어난 측면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재벌기업에 비해 유효세율 상승이 덜 가파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큼 명목상의 조세지원도 없으면서 동시에 재벌만큼 부채비율 등 조세절감으로 이어지는 비조세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제도적 조세지원의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 측정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세율의 경우 전 표본기간에 걸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측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보조금과 같은 조세지원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후하게 제공됨을 반영한다. 영업이익 기준 실효세율과는 달리 재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재벌기업과 대업을 세부담의 차원에서 차별하는 가장 큰 변수가 부채비율과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임을 반영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상당한 정도 기업특성 및 유효세율의 변화가 있었고 기업군별로 그 정도와 방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이므로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찾아내는 계량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다만 기초 분석의 현 수준에서도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갖는 실효성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 세부담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명목적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 유효세율은 명목 조세법규외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존재하는 조세유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 중심의 기업정책이 갖는 왜곡효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으로 인해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하다. 기업지원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 등 기능적 변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기능별 지원 방식은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자동적으로 차별화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기업 규모 결정을 둘러싼 왜곡효과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가피하게 기업규모별로 조세지원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규모와 다른 기업특성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기업특성에 따라 지원의 실효성과 상대적 이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부정책 수단 간의 유기성을 높일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기존 기업정책의 경우 조세, 재정, 금융, 규제 등 수단별로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행해지는데 종합적인 정책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조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종권,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7, 51-82면.
- 국세청,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2006.
- 권순철·권순창,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73-93면.
- 노현섭, 「세율인하에 따른 유효세율 변동성의 결정요인 분석」, □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1, 101-125면.
- 노현섭·정은주, 「대체적인 유효세율 측정치간의 공통성분석」, □ 세무학연구□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01, 85-114면.
- 박한순, 「세전이익, 법인세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 경영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00, 87-108면.
- 산업은행, □ 설비투자계획조사□ , 각년도.
- 손원의 외,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 1996, 125-52면.
- 이창우·전규안,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영학연구□ 제4호, 한국경영학회, 1997, 851-74면.
- 전규안, 「기업의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회계학회, 1997, 24-60면.
- 전주성, 「기업특성과 세부담: 대안적 평균유효세율 측정치의 비교」, □ 공공경제□ , 제9권 제1호, 2004.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실태조사□ , 각년도.
- 한국은행, □ 기업경영분석□ , 2005
- Jun, Joosung, "Korea's Tax Policy: A Growth-Oriented Choice," IPD, Columbia University, 2006 (forthcoming).
- Scholes, M., P. Willson. And M. Wolfson. "Tax Planning, Regulatory Capital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for Commercial Bank",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4. 1990, pp. 625-650.
- Scholes,. M., and M.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Global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Inc., 1992.
- Wilkie, P.,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2, pp.97-116.

[Abstract]

Post-crisis Trends in Firm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Joo Sung Jun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in firm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the 1996–2005 period. Leverage ratio and the ratio of depreciable assets to total asse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 tax rate based on corporate operating surplus, particularly for the *chaebol* firms.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 effects of lower leverage on the effective tax rate have been partly offset by generous tax subsidies provide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s firm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just to firm size variables but other firm characteristics.

Keywords: Effective Tax Rates, Debt-Ratio, Firm Characteristics, Financial Crisis

JEL Code: H2, M2